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41
----------	-------

발의연월일 : 2026. 7. 31.

발 의 자 : 허영 · 박해철 · 이훈기
박지원 · 권향엽 · 소병훈
박상혁 · 이해식 · 김준환
한민수 · 강준현 · 서삼석
박지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 산정 기준이 소음에만 국한되어 사격 훈련 등에 따른 충격진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입 시기에 따른 감액 등으로 인해 보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금전 보상을 넘어 실질적인 소음대책 · 주민지원사업과 토지매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충격진동영향도 기준을 신설하고, 보상금 산정 시 전입 시기 감액 규정 폐지 및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 금액을 현실화하는 한편,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토지매수 청구권 및 군소음피해보

상기금의 근거를 설치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등).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충격진동영향도”란 군사격장에서의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진동에 진동 발생 횟수 및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8. “소음대책사업”이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9.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소음영향도”를 “소음영향도 및 충격진동영향도(이하 “영향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음영향도”를 “영향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음영향도”를 “영향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음영향도”를 “영향도”로, “측정”을 “및 진동 측정”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음영향도”를 “영향도”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음대책사업

6. 주민지원사업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음대책사업의 계획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개량 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4. 그 밖에 소음대책지역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주민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주민지원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을 말한다) 설치, 교육문화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환경개선사업: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시설 환경 정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주민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토지매수 청구 및 절차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때에는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④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절차,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재원”을 “등 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급할”을 “지급하고,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군소음피해보상기금의 설치 등) ①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군소음피해보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⑤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소음영향도”를 “영향도”로,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신청절차 및 시기”를 “신청 절차·시기 및 공표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3년마다 보상금 지급 기준 금액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책정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소음피해”를 “소음피해 및 충격진동피해”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의2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3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4조제6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 금액의 적정성 검토 결과

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 적용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포함하여야 할 사항 중 종전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계획을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감액 규정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음영향도 및 충격진동영향도(이하 “영향도”라 한다)-----

-----영향도

② -----

-----영향도-----

③ -----

-----영향도-----

-----및 진동 측정-----

④ -----영향도-----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5. (생 략)

③ · ④ (생 략)

<신 설>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소음대책사업

6. 주민지원사업

7.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소음대책사업의 계획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기
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소음
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
치·개량 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
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
사업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

<신 설>

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4. 그 밖에 소음대책지역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주민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을 말한다) 설치, 교육문화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신 설>

업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환경개선사업: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시설 환경 정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주민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토지매수 청구 및 절차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

제13조(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

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때에는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④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절차,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소음피해 보상금 등 재원 마련 의무) -----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지급하고,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을 추진할-----

-----.

제13조의2(군소음피해보상기금의

설치 등) ① 국방부장관은 소
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금 지급,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
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군
소음피해보상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
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입금

③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운용
· 관리한다.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⑤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 절차 등) ①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관계)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보상금 신청인이 동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 절차 등) ① -----영향도-----
--지급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방부장관은 3년마다 보상금 지급 기준 금액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제6항-----
-----신청절차·시기 및 공표방법-----
-----. 이 경우 보상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책정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한 경우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과 관련하여 입은 <u>소음피해</u>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 2.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3. ~ 5. (생략) ② ~ ④ (생략)	----- -----<u>소음</u> <u>피해 및 충격진동피해</u>----- ----- -----. 제20조(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7조의2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3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4조제6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 금액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관한 사항 6. ~ 8.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